

제412회 임시회  
'23. 10. 17.(화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3년 10월 4일
- 회부일자: 2023년 10월 4일

3. 제안이유

-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출연개요

(단위:백만원)

연번	출연기관	소관부서	출연내역	예정금액	비고
	2개 기관			2,108	
1	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	복지정책과	서비스원 인건비 및 운영·사업비	1,936	
2	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	보건정책과	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	172	

5. 주요내용

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<sup>1)</sup> 출연금 : 1,936백만원

○ 출연목적

- 도민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

1)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특수법인

-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·운영

○ 출연 내역 및 예정금액

출연내역	예정금액	재원	비고
합 계	1,936백만원	도비 100%	
사회서비스원 인건비	1,016백만원		
사회서비스원 운영·사업비	920백만원		

○ 기대효과

- 공공성·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
-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
-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

② **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<sup>2)</sup> : 172백만원**

○ 출연목적

-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수급문제 개선 및 간호사 타지역 유출방지
- 감염병대응, 공공의료사업 수행 등 질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마련
- 안정적인 간호인력 공급을 통한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성공적 정착

○ 출연 예정금액 : 172백만원

○ 출연내역 : 지방의료원 등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

○ 기대효과

-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원활한 감염병전담병원 역할수행,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제공, 재활병동 운영 등 보다 수준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

2)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

## 6. 검토의견

### 가. 제출배경 및 시기의 적정성

- 본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및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음.
- 이는 무분별한 출자·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.

#### 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※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: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
- 또한 2024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 미리 제출된 바, 제출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나. 출연 근거 및 주요내용 검토

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: 1,936백만원 (23년 출연과 동일금액)

- 본 출연계획안은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,
  -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 운영과 민간 제공기관을 지원함으

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 단위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인건비 지출 및 운영·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타당함.

□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- 출연금 재원 조달에 있어, 2023년에는 국비 50%, 도비 50%였던 것이 2024년도에는 도비 100%로 변경됨. 이는 기재부의 지방정부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국비지원 불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.

□ 사회서비스원 국비 지원방침 변경 (복지부)

< 그간 국비지원 방침 > ※ '19년부터 시범사업 추진

- 시도 서비스원 설립 후 국비 지원(3년 50%, 이후 30%) \*18. 7월 당정청 협의

< '24년 예산확보 현황 >

- 복지부(안) 국비 133억원 기재부 전액 삭감

- 우리 도 배정(안) 국비 10.1억원(전년대비 4.6% 증) 삭감

- \* (기재부) 지방정부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국비지원 불가
- \* (복지부) 충북 등 신생기관만이라도 국비 요청 하였으나, 전액 국비가 삭감됨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
- \* (전국 사회서비스원장단) 원장단 TF팀 구성 후 정부 및 국회 예산 확보 대응

- 또한, 에너지 비용 및 물가상승 등 운영비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, 본 출연계획안에 따른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 출연금(1,936백만원)과 동일한 금액이 제출되었음.

- 이는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국비지원이 중단돼, 도비 100% 지원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.

※ 충북도의 출연금 동결을 위한 조치

- 인원 감축(20명 →15명) \*現 근무 직원수는 13명임.
- 운영비 중 광고비, 행사운영비, 교육훈련비 등 감액

- 다만, 사회서비스원 인력을 20명에서 15명으로 감축하여 운영할 경우,

- 재정은 절감되겠지만, 이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.
- 따라서 복지부 및 전국 사회서비스원장단과의 협조를 통해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,
  - 인력 감축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축소 및 직원 업무량 가중 등의 문제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, 필요시 추후 예산에 반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.

**②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: 172백만원 (23년 160백만원 출연보다 12백만원 증액)**

- 본 출연계획안은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,
  - 내용 측면에서 볼 때, 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및 이직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간호사 육성 장학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·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.

**□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**

제8조(출연) 도지사와 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-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에 대한 수요급증 및 감염병 발생 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과 정부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의 확대에 따라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, 충북도 내 대학 간호학과 졸업생 중 15% 정도(20년 기준)만이 도 내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고, 또한 도내 공공의료원의 경우 간호사 수가 정원 대비 19% 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.
  - 따라서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, 졸업 후 2년간 도 의료원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<충청북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(청주·충주의료원) 간호인력 부족현황>

(단위: 명/'22.10. 기준)

구 분	계	청주의료원	충주의료원
정 원	507	285	222
현 원	408	221	187
과 부 족	△99(20%)	△64(22%)	△35(16%)

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도 출연금이 2023년 160백만원에서 2024년 172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지원 대상기관 및 사업량이 기존 2개소(청주·충주의료원), 40명에서, 2024년 5월 개월되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의 간호인력 지원 필요성에 따라 3개소, 43명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임.

□ 증액사유

- 대상기관 증가(2개소 → 3개소/청주·충주의료원, 단양군보건의료원)에 따른 사업량 증가  
- 40명('23년) ⇒ 43명('24년, +3명) ※ 단양군 사업참여요청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출연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 각 기관별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법 및 조례에 규정된 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제출 시기 또한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전에 제출된 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출연금의 적정성 측면에서 볼 때,
  - 충북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 운영과 민간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 단위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,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의

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 다만, 제출된 출연계획안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인력을 20명에서 15명으로 감축 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및 이직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,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본 출연계획안은 법적,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, 본 의결에서는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, 출연 금액은 이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.